

1. 개정이유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취득 업체는 3년마다 정기 심사를 통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유효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품질인증 표지의 표시사항에 인증기관명이 포함되어 있어 정기 심사 등에 의해 인증기관이 변경되면 변경된 인증기관 기재를 위해 포장재 재인쇄를 하여야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안 29조)

- 1)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통일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국산’으로 개정

나. 인증 표시의 개선(안 제32조 및 별표 5, 별표 8, 별표 9)

- 1) 전통수산물 품질인증과 원산지인증 표시에 기업의 포장재 재인쇄 불편 해소를 위해 인증기관명, 인증번호를 표시하던 것을 인증번호만 표시하도록 함

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33조)

-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심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함

라. 원산지인증의 유효기간 완화(안 제38조)

- 1) 원산지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심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국산”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4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3년”을 각각 “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 따라 사용 중인 별표 5, 별표 8, 별표 9의 인증 표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인증번호”로 한다.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제32조제1항 관련)

1. 표지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 3)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수산전통식품”, “(KOREAN TRADITIONAL SEAFOOD)” 및 “KOREAN TRADITIONAL SEAFOOD”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의 색상과 같게 하고, 표시도형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란색 C100 + M70, 빨간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아. 표시도형은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7) 중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인증번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7) 중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인증번호”로 한다.

원산지인증의 표시(제39조 관련)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표시

가. 표시도형



인증번호:



인증번호:

나. 가목의 표시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은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 제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도형의 글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도형 내부의 “원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95% 이상” 및 “국가명산 100%”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의 색상과 같게 하고, 표시도형 하단의 “해양수산부”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란색 C100 + M70, 빨간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6)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7) 표시도형 밑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8) 표시도형은 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의 포장재·용기에 표시한다.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

가. 표시도형



인증번호:



인증번호:

나. 가목의 표시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은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 제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도형의 글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하고, 메뉴판 등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도형 내부의 “식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95% 이상“ 및 “국가명산 100%“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의 색상과 같게 하고, 표시도형 하단의 “해양수산부“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란색 C100 + M70, 빨간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6) 표시도형의 크기는 메뉴판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7) 표시도형 밑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8) 표시도형은 인증을 받은 해당 음식점등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되, 개별 음식에는 표시할 수 없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한다.

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

1. 표시도형



2. 제1호의 표시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의 경우는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3. 제도법

가. 현판의 크기는 가로 270mm, 세로 360mm로 한다.

나. 표시도형은 인증받은 조건에 따라 “95% 이상“과 “100%“ 중 선택하여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210mm로 한다.

다. “원산지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

라. “인증번호“은 바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

마. 표시판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3:4로 유지할 경우 부착 위치를 고려하여 크기를 변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표시도형 및 글자의 크기를 같은 비율로 변형해야 한다.

바. 표시도형의 글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하고, 음식점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앞판의 문자 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하되, 음식점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 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 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 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 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 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국내에서 생산되는</u>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 는 서류	2. <u>국산</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생 략)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 려는 경우 <u>표시해야 하는 사항</u> <u>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② ----- ----- ----- ----- <u>인증번호를 표시해야</u> <u>한다.</u>
1. <u>인증기관명</u>	<u><삭 제></u>

2. 인증번호

③ (생 략)

제33조(수산물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물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물통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제38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산물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

----- 4년-----

-----.

② -----

----- 4년-----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

----- 4년-----
-----.

② -----

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 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 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 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 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 증을 받은 날부터 <u>3년</u>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물 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③・④ (생 략)	----- ----- ----- ----- ----- ----- <u>4년</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